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①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종축업과 가축사육업에서 사육하는 닭 또는 오리를 말한다.

②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입식하려는 가축의 종류
 2. 입식 규모 및 예정일
 3. 현재 사육하는 가축의 마리수
 4. 가축사육시설의 규모 및 사육 형태
 5. 출하 예정일
 6. 입식하려는 가축이 출하된 부화장 또는 농장
 7. 축산계열화사업자 정보(계약사육농가에 한한다)
 8. 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비 여부
 9.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방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법 제15조의2제2항 본문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이 시장·군수·구

청장에게 입식 사전 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0호서식에 따른 입식 사전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식하기 7일 전까지 제출하거나 팩스 또는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등으로부터 입식 사전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내용을 방역본부장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별표 1의8 제2호마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바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식용란 선별포장업자

소독시설	(1) 출입구에 차량 외부, 바퀴, 흙받이 등을 세차·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2대 이상의 고압분무세척기를 갖추어 둘 것 (2) 작업장, 창고, 관리사무실 등의 출입구에 신발 소독조를 설치할 것 (3) 난좌, 파레트, 합판 등 식용란 운반에 사용되는 자재를 소독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둘 것 (4) 출입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5) 방문차량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둘 것
방역시설	(1) 해당 시설의 출입구에 차량진입 차단 바 또는 줄·문 등의 차단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 차단 바 등이 필요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2) 사람, 차량, 동물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통해서만 방역 후 출입할 수 있도록 울타리 또는 담장을 설치할 것. 다만, 고도 차이, 개천, 경계림 등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자연경계를 갖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입구 및 외부 통행로와 접하는 울타리·담장 등에 외부인 출입통제 안내판을 설치하여 방역상 출입통제구역임을 알리고 출입 시 관계자의 허가를 받도록 할 것 (4) 종계업 또는 닭 사육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그 종계업 또는 닭 사육업의 시설 중 종란이나 달걀을 집란하거나 보관하는 시설의 일부를 이용하고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출입구를 가축사육시설의 출입구와 서로 분리할 것. (5) 종계업 또는 닭 사육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가 그 종계업 또는 닭 사육업의 시설 중 종란이나 달걀을 집란하거나 보관하는 시설의 일부를 이용하고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하는 경우에는 식용란 선별포장업의 입구에 기후에 관계없이 농장종사자, 방문자 등 출입자가 착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작업복·신발·장갑을 구비하고, 대인 소독, 신발 소독 등을 할 수 있도록 컨테이너, 부스, 천막 등 외부와 차단된 방역실을 설치할 것 (6) 약품, 소형 기자재, 그 밖의 소모품 등을 소독한 후 이용할 수 있는 물품반입창고를 설치할 것. 다만, 기자재, 소모품 등이 소량인 경우 식용란선별포장업 입구에 방역실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	---

별표 2의4 제4호에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타. 식용란 선별포장업자 중 가금 사육농장 내에 영업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농장 이외의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을 반입하여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별지 제5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가축(닭·오리)의 입식 사전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아니하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7일	
신고 농장	농장명			농장주 성명			
	전화번호						
	주소						
신고 내용	입식축종						
	육계[], 종계[], 육용오리[], 종오리[], 산란계[], 토종닭[], 혼합[]						
	사육형태						
	축사[], 방목[], 축사 및 방목 혼합[]						
	사육규모		현재 사육 마리수		입식 마리수		
	동, m²						
	입식 일령			입식 예정일			
	출하 예정일			소독설비·방역시설 구비 및 정상작동 여부			
				소독설비[], 방역시설[], 정상작동[]			
	출하 부화장 또는 농장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축산계열화사업자(계약사육농가에 한함)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5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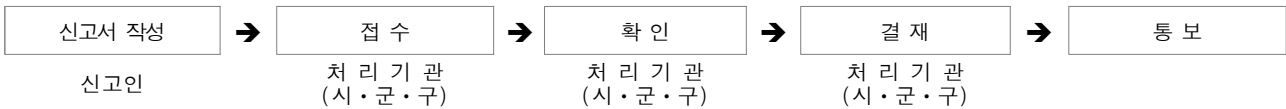
붙임 서류	신고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개인정보 및 위치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

위 신고인은 개인정보와 농장 정보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축방역 지원 및 가축이력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8조의2(가축의 입식 사전 신고) ①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이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하는 종축업과 가축사육업에서 사육하는 닭 또는 오리를 말한다.</u> <u>②법 제15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u> <u>1. 입식하려는 가축의 종류</u> <u>2. 입식 규모 및 예정일</u> <u>3. 현재 사육하는 가축의 마리 수</u> <u>4. 가축사육시설의 규모 및 사육 형태</u> <u>5. 출하 예정일</u> <u>6. 입식하려는 가축이 출하된 부화장 또는 농장</u> <u>7. 축산계열화사업자 정보(계약 사육농가에 한한다)</u> <u>8. 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 구비 여부</u>		

9.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 방역에 필요하다고 인정하
는 사항

③법 제15조의2제2항 본문에 따
라 가축의 소유자등이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입식 사전 신고
를 할 때에는 별지 제0호서식에
따른 입식 사전 신고서를 작성
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입식하기 7일 전까지 제출하거
나 팩스 또는 그 밖에 시장·군
수·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가축의 소유자
등으로부터 입식 사전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신
고된 내용을 방역본부장에게 제
공하여야 한다.